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552
----------	------

2024년 2월 29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2월 2일 유만희 의원외 18명
- 회부일자 : 2024년 2월 7일
- 상정일자 :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4년 2월 28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유만희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 3개월~출산 후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,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6개월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서울시에 등록된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음.
- 초저출생 시대 임신·출산 관련 지원정책만큼은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임신부 교통비 지원기준에서 ‘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’ 조건을 삭제함.(안 제4조의4제1항제1호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)
- 입법예고 (2024.2.14.~2.18.) 결과 : 의견없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 중 서울시에서 일정기간(6개월) 이상 거주하도록 하는 조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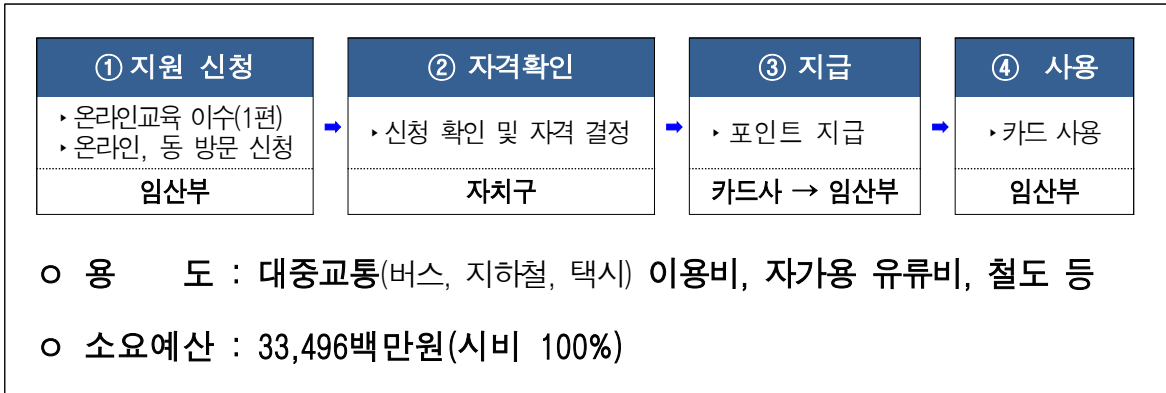
2 주요사항 검토

□ 임산부 교통비 지원기준 변경 (안 제4조의4)

- 동 개정안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준에서 ‘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’ 조건을 삭제하여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려는 것임.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4(임산부 교통비 지원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.	제4조의4(임산부 교통비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신청일을 기준으로 <u>6개월 이상</u> 계속하여 <u>서울특별시</u> 관할	1. ----- <u>서울특별</u> <u>시</u> -----



- 현행 조례상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중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제한하여 교통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지원불가한 사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서울에 살다가 결혼 후 경기도에 거주한 이OO씨, 임신 후 친정엄마 근처인 서울시 A구로 전입하였으나 신청 당시 6개월 계속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못해 지원 불가 ▸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산모는 임신 중으로 임산부교통비 지원 신청하였으나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이 충족되지 못해 지원불가

-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 계획인 “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」 48개 사업 중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총 5개 사업으로 이 중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은 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부터 요건을 폐지하기로 하였음²⁾.

2) 여성가족정책실 저출생정책추진반(2024. 2. 14.), 보도자료 : '서울형 산후조리경비' 6

※ 임산부교통비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사업은 근거 조례 상에 거주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, 집행기관 방침상의 제한임.

<「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」 사업 중 거주요건(6개월) 부여 사업 >

실국	사업명	신청자격	
		거주요건	기타 요건
여성가족 정책실 (2개)	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	市 6개월 이상 거주	市 출생신고 출산 후 60일 이내
	임산부 교통비 지원	市 6개월 이상 거주	임신 3개월~출산 후 3개월 이내
시민 건강국 (3개)	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	市 6개월 이상 거주	출산 후 8주 이내
	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	市 6개월 이상 거주	-
	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	市 6개월 이상 거주	20~49세 여성

※ 거주요건 확인 기준 :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연속 6개월 이상 거주

- 또한 "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" 사업 중 5개 사업(서울엄마아빠택시,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·밀키트 할인 지원, 서울형 가사서비스, 서울우먼업 구직지원 사업)은 서울시 거주만으로 지원되고 있음.
- 이에 초저출산 상황에서 임신·출산 관련 지원정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원기준에서 '6개월 이상 계속 거주' 조건을 삭제하여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내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.

개월이상 거주요건 전격 폐지, 출산맘 몸·마음 챙겨.

- 다만 바우처의 특성 상 7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어 거주 요건 폐지시 거주지 이동을 통해 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수급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.

<지자체별 유사사업 추진 현황>

구분		지원기준	금액	
서울시	광역	·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· 임신 3개월부터 출산후 3개월 이내 신청	70만원	
인천시	광역	·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거주 ·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	50만원	
경기도	기초	안성	· 신청일 기준 안성시 6개월 이상 거주 ·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	50만원
		가평	· 출산일 기준 안성시 6개월 이상 거주 ·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	30만원
		여주	· 임신확인일 기준 여주시 6개월 이상 거주 ·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	30만원

- 이 밖에도 국회예산정책처(2023.11.)³⁾는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, 재정여력이 낮은 지자체에서 재정 여력이 높은 인근 지자체로의 인구 이동 유발, 지자체 간 출산지원금의 경쟁적 증액으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 우려 측면을 고려하여 출산지원금 사업 운영 시 최소 거주요건

3) 국회예산정책처(2023.11.), “중·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: 3. 저출산 대응 전략”, 예산안분석시리즈Ⅶ.

검토 및 광역-기초 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 점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.

3 종합 의견

- 동 개정안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준에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조건을 삭제하여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함임.
- 초저출산 상황에서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출산·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.
- 다만 거주조건 등 지원기준 완화에 따라 타지자체에서 중복수급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만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55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2일

발 의 자: 유만희, 고광민, 김영철,
김용호, 김지향, 김춘곤,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문성호, 박 석,
박영한, 서호연, 소영철,
송경택, 신동원, 옥재은,
유정인 의원(19명)

1. 제안이유

-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 3개월 ~ 출산 후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,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6개월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서울시에 등록된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음.
- 초저출생 시대 임신·출산 관련 지원정책만큼은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임산부 교통비 지원기준에서 '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' 조건을 삭제함.(안 제4조의4제1항제1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4제1항제1호 중 “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, “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”을 “거주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의4(임산부 교통비 지원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신청일을 기준으로 <u>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(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<u>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)</u>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	<p>제4조의4(임산부 교통비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서울특별시</u> <u>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거주</u> <u>하는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4(임산부 교통비 지원)를 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
관련 조·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4조의4(임산부 교통비 지원)	○	다만,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

-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4(임산부 교통비 지원)를 변경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재로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은 분명하나, 현 시점에서 관련 통계가 없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하여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함

※ (관련부서 의견조회) 제4조의4제1항제1호의 “6개월 이상 계속하여”를 삭제함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부서(양성평등담당관) 확인결과 기추진 사업예산(붙임 참고)으로 추가 지원대상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 희 선
추계세제팀장	이 정 수
추계분석관	손 제 승
	☎ 02-2180-7954
	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[붙임] 2024년 서울시 임신부 교통비 지원 예산 (본 개정안 제4조의4 관련)

□ 사업목적

- 교통약자인 임신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,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4년 1월 ~ 12월
- 지원대상 : 임신, 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신부
- 지원내용 : **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급**
- 지급방식 : 신용(체크)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
- 바우처 사용 용도 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, 택시, 철도)이용비, 자가용 유류비 등
- 소요예산: 33,496,056천원(전액시비)

□ 향후 기대효과

- 교통약자인 임신부 교통 편의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

□ 산출근거

(단위: 천원)

과목구분	2024년 예산내역	
사무관리비	○ 사업홍보, 매뉴얼 제작 등 20,000,000원	= 20,000
사회보장적수혜금(취약계층, 지방재원)	○ 임신부 교통비 지원 700,000원*20명	= 14,000
사회복지사업보조	○ 임신부 교통비 지원 - 22년~23년 미사용자 77,288명*200,000원	= 33,317,559 15,457,559
	- 2024년 사용 대상자 (38,000*94%)*500,000원	17,860,000
	○ 시스템 유지보수 86,497,000원	= 86,497
	○ 보조금 실적보고서 검증 용역 8,000,000원	= 8,000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자치구 사업 홍보 등 2,000,000원*25개구	= 50,000

자료 : 2024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설명서 발취